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7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6월 16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’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‘겸직신고’ 서식을 개정하고, 조례 위임된 겸직내용 공개 방법 중 ‘공개항목’을 서식으로 신설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등 현행화 및 겸직신고 서식을 개정하고 신고내용 공개항목 규정 서식을 신설함(별지서식).
- 나.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 공개 시기와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10조의2제4항 일부개정).
- 다. 겸직 신고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·점검하도록 함(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 및 제4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 1회”를 “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,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중전의 별지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[별지 제1호 서식]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합니다.

연번	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			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				
성명	생년월일			
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				
겸 직 내 용	기관단체명			
	직위	재직기간	~	
	수행업무 내역			
	분야	협회 및 단체[], 도매 및 소매업[], 운수 및 창고업[], 숙박 및 음식점업[], 정보통신업[], 부동산업[],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[], 교육서비스업[], 건설업[], 기타[] ※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참조 체크		
	기관 성격	민간[] 공공[]	영리성 여부	영리[] 비영리[]
	보수 수령 여부	보수 수령[], 보수 미수령[]		
	보수 수령액	근로소득	월 천원,	년 천원
		근로소득 외 소득	월 천원,	년 천원
		계	원	
	기관·단체 주소		전화번호	
기타사항				
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(변경) 사항을 신고합니다.				
			년 월 일	
서울특별시의회의원			(서명 또는 인)	
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의2(겸직신고) ① <u>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<u>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의2(겸직신고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에 따라 <u>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</u> -----.</p> <p>⑤ <u>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,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.</u></p>

